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2007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2.01.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9.24

[복주부]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복주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복주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 138-3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 010-3810-402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복주부]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복주부	복주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 138-3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3.25	2022.03.31	류수열	010-3810-4020	-
	법인등록번호	174811-0118235	사업자등록번호	465-81-0238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류수열	복주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 138-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류수열	010-3810-402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김도윤	복주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 138-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류수열	010-3810-402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메밀명가	복주부	2022.04.0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4	류수열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복주부	-
상 호	복주부 []점	-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0-1767743
광 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33,042	7,060	25,982	145,465	5,981	5,982
2023	53,656	23,150	30,506	224,964	5,091	4,523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류수열	대표이사	2022.03 ~ 현재	(주)복주부 대표이사	사업총괄
	김도윤	이사	2022.03 ~ 현재	(주)복주부 이사	경영
비관련	류미선	감사	2022.03 ~ 현재	(주)복주부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2	1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 분	기 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복주부	가맹사업 경영	2022.04 ~ 현재 (가맹점 없음)	[복주부]라는 메밀국수, 코다리조림 등 한식 요리 전문 브랜드 경영 (등록번호 : 20220071)
대표자	류수열 (메일명가)	가맹사업 경영	2022.01 ~ 2022.03 (가맹점 없음)	[복주부]라는 메밀국수, 코다리조림 등 한식 요리 전문 브랜드 경영 (등록번호 : 20220071)

당사는 당사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메밀명가'에서 운영하던 영업표지 [복주부]를 2022년 04월에 양수하였습니다. 상기한 기간은 정보공개서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변동기간을 말하며, 2023년 04월 기준 가맹점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복주부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 2020.06.17 등록 2021.08.25	출원 40-2020-0102559 등록 40-1767743	류수열	2031.08.25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복주부] 가맹사업 현황

1. [복주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당사는 현재 가맹점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 없음)

2. [복주부]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복주부]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메밀명가	복주부	류수열	가맹점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4
(주)복주부	복주부	류수열	가맹점 없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 138-3

3. [복주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복주부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한식	메밀국수, 코다리조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복주부]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북주부] 가맹점 수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북주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북주부]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8. [북주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북주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사항 없음					
광고	해당사항 없음					
판촉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별도의 예치대상이 되는 초기가맹금을 개점 후 지급 받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북주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교육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24,200				
가입비 (가맹비)	22,000	가맹점 오픈 후 즉시	개점 후 지급으로 반환조건 없음	개점 후 반환하지 않음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	2,200			교육 후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평기준(1평=3.3㎡)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650				
초도물품	가맹본부	1,650	-	발주시 선지급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당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인테리어, 설비, 집기, 의탁자, 간판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해당사항을 구비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 및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금액책정이 곤란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도물품비는 매장개점시 구매해야하는 원부재료 등의 금액으로 가맹점별 점포 규모 및 상권이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을 운영할 입지를 선정하지 않으며, 점포 오픈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입지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별도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북주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해당없음	-	-	-	-	-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청구를 받은 후 2주 내	광고 미실시	광고 시행	-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미실시	판촉 시행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실시 7일전	교육 3일전 취소시	교육 이수후	교육필요시 진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교체/보 수 후	관련 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 급 기 일 의 다 음 날 부 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제31조의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양수한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복주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가맹사업 운영에 따른 채무액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나머지 채무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다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수인 형태	항 목	금 액
양도인의 최초계약기간 중 잔여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양수 받은 경우	양수 가맹비	해당없음
양도인의 최초계약기간 종료 이후 양수받은 경우	양수 가맹비	최초 가맹비의 50%
양수인이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양수 가맹비	최초 가맹비의 100%

양수인은 양수 가맹비 외에 'IV,1.1)'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

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3)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복주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현재 귀하가 [복주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연간 거래총액)	비고
-	-	-	-	2023년 기준
계			0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복주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2023년 기준
계				-	

2) 당사가 [복주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	-	2023년 기준
계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V.3.3) 상품/용역명 참조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시 :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 2회 위반시 : 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 및 시정요구 - 3회 위반시 :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에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미성년자	주류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 1 회 위반시 :

		없음	서면 통보 후 시정 요구 - 2 회 위반시 : 1 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과 시정 요구 - 3 회 이상 위반시 : 계약 해지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맹점 사업자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코다리조림	12,000	변경시 서면 및 별도 통지	2024년 05월 기준
낙지 볶음	11,000		
쭈꾸미볶음	9,000		
계절메뉴			
메밀냉막국수	9,000		
메밀비빔막국수	9,000		
동태탕	10,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메밀국수, 코다리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북주부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합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예외: 상업지역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 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변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 5. 제4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북주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북주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전수창업을 통해 아래의 매장에 **[북주부]** 가맹점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매장에서는 **[북주부]** 가맹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매장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영업설정기준 지역(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는 **[북주부]**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아래 영업표지 중 **[북주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매장은 전수창업형태로 영업을 개시한 곳입니다.

구분	영업표지(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개인매장	일월미식(경북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코다리조림, 낙지볶음 등 [복주부] 판매상품과 동일	해당 영업지역내 [복주부] 가맹점 개설하지 않음
	복주부쭈꾸미 동서변점(대구시 북구 동변로)		
	복주부 지산점(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복주부쭈꾸미 (경북 경산시 압량읍)		
	복주부 쭈꾸미 불로점(대구시 동구 팔공로)		
	복주부 수성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복주부쭈꾸미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복주부 동구청점(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또한,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북주부]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다만,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1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	

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 23 조 1 항	제 32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특히 일신상의 사유인 경우는 1개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을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가맹금 및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관리비 등 부담비용 참조)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이전 완료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 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 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 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 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국내와 해외에서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복주부]**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해지를 포함)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 영업표지 매장에서 당사의 영업표지 외의 타제품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복주부가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메밀국수 및 코다리조림 등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북주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1:00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개점	문의 : 당사

상기한 영업시간은 권장 표준영업시간으로 지역 특성 및 영업형태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 명 이상	직접근무 원칙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당사 교육 이수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상기 권장 종업원 수는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숫자로, 실재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의미하며, 면적 및 운영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
----------	-------	-------	----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확인 → 관리표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의무사용 품목 사용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귀하는 통지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브랜드+상품광고	50%	50% (전체가맹점)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	대중매체광고 (이벤트 등)
	상품+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0%	할인금액 (소비자가) 10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행사 시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0%	증정상품 출하가 100%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0%	판촉물 제작비용 100%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팸플렛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지,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복주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

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3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1회 당 금 오백만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원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또는 해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일금 일천만원(₩ 10,000,000)과 기 진행된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일금 이백이십만원(₩ 2,200,000)<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37조

복주부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50일 내외	14~15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사업 설명 ·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0	
면접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점 승인	D-3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4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간판	D-33~3 (30일)	
교육 실시	- 오픈 교육 실시	D-5~2 (3일)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D-day	

상기 일정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문의 : 당사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복주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신규교육	메뉴 레시피교육 POS 사용 등 운영 교육 및 지원	이론/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후까지	필수교육
비정기 교육 (보수 및 수시)	신메뉴 서비스 교육 등	이론/실습	교육 필요시 14 일전 통지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복주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교육	2시간 x 3일 (6시간)	2,200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비정기 교육	1~3일 (신메뉴 등 교육량에 따라 변동)	실비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044-200-4938)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점주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